

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5 ~ 86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15. 10. 26.
제 출 자	거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른 환경보전 보조금 지원사업의 명시적 근거 마련
- 환경조사 결과 공표 의무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군민 정보보호 도모

2. 주요내용

가.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시기 변경(안 제9조)

- 5년 마다 ⇒ 10년 마다

※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시기 10년

나.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구체적 명시(안 제17조)

- 군민·사업자·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·운영 및 조사·연구·기술개발
- 환경보전을 위한 자연정화 등 실천사업
- 옛도랑 복원사업 및 생태 교육·홍보·복원 활동
- 야생생물 보호 및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활동
- 환경오염 감시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

다. 군내 정기적 환경질 조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한 공표 조항 삭제(안 제25조)

라.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용어순화함

- 이라함은 ⇒ 이란, 타 ⇒ 그 밖의, 인 ⇒ 명, 자 ⇒ 사람 등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환경정책기본법」,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'15년도 예산 56백만원 확보

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(예산, 법무통계, 규제개혁담당)

라. 기타사항

- 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2) 규제심사 : 삭제함(안 제25조)
- (3) 입법예고
 - (가) 예고기간 : 2015. 9. 9. ~ 9. 28.
 - (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- (4) 비용추계서 : 불임
- (5) 성별영향분석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거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”을 “군”으로 한다.

제4조 각 호외의 본문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“이라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5조제10호,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제6호, 제12조제2항, 제24조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3장 제목 “(환경기본계획등)”을 “(환경보전계획 등)”으로 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환경보전계획의 수립)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 환경보전계획(이하“환경계획”이라 한다)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환경여건 변화와 전망
2.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
3.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전시책 및 사업계획
4.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
5.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

③ 군수는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군수는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계획의 내용을 우선적

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각1인”을 “각 1명”으로 “15인”을 “15명”으로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환경기본계획”을 “환경계획”으로 하며, 같은 조제4항 중 “범위내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제1호 중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삭제한다.

제17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군은 군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정보·기술·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군민·사업자·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·운영 및 조사·연구·기술개발
2.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·홍보 및 자연정화 등 실천사업
3. 옛도랑 복원사업 및 생태 교육·홍보·복원 활동
4. 야생생물 보호 및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활동
5. 환경오염 감시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

제20조 제목 “(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등과의 협력)”을 “(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)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 중 “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”를 “정기적으로 실시한다.”로 한다.

제26조와 제27조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거창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</u>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,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군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,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·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<u>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4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"<u>환경</u>"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. 2. "<u>자연환경</u>"이라 함은 지하,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. 3. "<u>생활환경</u>"이라 함은 대기, 물, 폐기물, 소음, 진동, 악취등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. 4. "<u>환경오염</u>"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<u>기타</u>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 오염, 수질오염, 토양오염, 해양오염, 방사능 오염, 소음·진동,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. 5. "<u>환경보전</u>"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·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. 6. "<u>지구환경보전</u>"이라 함은 지구온난화, 오존층파괴, 해양오염,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군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. 	<p>제4조(정의) ----- <u>뜻은</u>----- 1.----<u>이란</u>----- ----- 2.-----<u>이란</u>----- ----- ----- 3.-----<u>이란</u>----- ----- ----- 4.-----<u>이란</u>----- <u>그 밖의</u>----- ----- ----- 5.-----<u>이란</u>----- ----- ----- 6.-----<u>이란</u>----- -----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군의 책무) (생략) 1. ~ 9. (생략) 10. <u>기타</u>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</p> <p>제6조(사업자의 책무) ① ~ ② (생략)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. ④ (생략)</p> <p>제3장 환경기본계획등</p> <p>제9조(환경기본계획의 수립) ① 군수(이하"군수"라 한다)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 환경기본계획(이하"환경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② 환경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인구, 주택, 산업, 교통, 토지이용등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.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.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·단계별 환경기본시책 4.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.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. ④ 군수는 군의 도시기본계획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 내용과의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. ⑤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군의 책무) (현행과 같음) 1. ~ 9. (현행과 같음) 10. <u>그 밖의</u> -----</p> <p>제6조(사업자의 책무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<u>그 밖의</u>----- ----- ----- -----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장 환경보전계획 등</p> <p>제9조(환경보전계획의 수립)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 환경보전계획(이하"환경계획"이라 한다)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②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 1. 환경여건 변화와 전망 2.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.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4.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.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④ 군수는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계획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환경위원회의 설치등) ① (생 략) ② 환경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<u>각1인</u>을 포함하여 <u>15인</u>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, 위원은 군수가 관계공무원, 군의회 의원 <u>기타</u>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<u>자</u> 중에서 위촉한다. ③ (생 략) 1. <u>환경기본계획</u>의 수립에 관한 사항 2. ~ 5. (생 략) 6. <u>기타</u> 환경보전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환경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「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<u>범위내에서</u>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⑤ (생 략)</p>	<p>제10조(환경위원회의 설치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각 1명</u>-----<u>15명</u>----- ----- --<u>그 밖의</u>----- -----<u>사람</u>----- ③ (현행과 같음) 1. <u>환경계획</u>----- 2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그 밖의</u>----- ----- ④----- ----- -----<u>범위에서</u>----- -----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자연 환경의 보전) ① (생 략) ② (생 략) 1.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,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<u>범위 안에서</u> 이루어져야 한다. 2. ~ 3. (생 략) ③ (생 략)</p>	<p>제11조(자연 환경의 보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----- ----- -----<u>범위에서</u>----- 2. ~ 3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(자원순환적이용 등의 추진) ① (생 략) ② 군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설건설 및 유지관리 <u>기타</u>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</p>	<p>제12조(자원순환적이용 등의 추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<u>그 밖의</u>----- -----</p>
<p>제13조(지역환경기준의 설정) 군수는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군의 환경여건에 적합한 <u>군 환경기준</u>을 「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」에 의한 환경기준보다 엄격하게 설정할 수 있고, <u>이의</u>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<삭 제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지역 배출허용 기준 설정) ① 군은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에 의한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.</p> <p>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·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제15조(지역환경영향평가) 군수는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환경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제17조(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등) ① (생략)</p> <p>② 군은 군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군민·사업자·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·운영 또는 조사·연구등에 필요한 정보·기술·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	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제17조(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등) ① (생략)</p> <p>② 군은 군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정보·기술·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군민·사업자·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·운영 및 조사·연구·기술개발 2.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·홍보 및 자연정화 등 실천사업 3. 옛도랑 복원사업 및 생태 교육·홍보·복원 활동 4. 야생생물 보호 및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활동 5. 환경오염 감시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

현 행	개 정 안
<p>제20조(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등과의 협력) 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20조(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) ----- ----- -----</p>
<p>제24조(환경교육·홍보 등의 진흥) 군은 교육기관, 민간단체,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·보급 및 환경교육·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24조(환경교육·홍보 등의 진흥)---- -----그 밖의----- -----</p>
<p>제25조(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) ① 군은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·측정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</p>	<p>제25조(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) ① ----- ----- -----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6조(환경백서) ① 군은 환경보전 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매년마다 작성하여 공표한다.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.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.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</p>	<p><삭 제></p>
<p>제27조(보고) ① 군은 매년 주요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당해 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 2. 다음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.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</p>	<p><삭 제></p>

거창군 환경기본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
- 제17조2항(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)

② 군은 군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정보·기술·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군민·사업자·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·운영 및 조사·연구·기술개발
2.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·홍보 및 자연정화 등 실천사업
3. 옛도랑 복원사업 및 생태 교육·홍보·복원 활동
4. 야생생물 보호 및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활동
5. 환경오염 감시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

2. 비용추계의 결과

- 비용추계의 결과 (단위 백만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		(2016년)	(2017년)	(2018년)	(2019년)	(2020년)	
세출	군비	56	56	56	56	56	280
세출	지방세	-	-	-	-	-	-
총 비용(a-b)		56	56	56	56	56	280

3. 관련 의견

-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은 거창군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통해 후손에의 좋은 환경을 유산으로 남기기 위한 공익적 활동이므로 환경유산 자체가 계상이 불가능한 세입이므로 지원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.

작성자 : 녹색환경과장 김 삼 수